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제2차)
【2023. 1. 18.(수) 11:0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월 18일
전문위원 정 하 근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9
- 나. 발 의 자: 이종숙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1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월 16일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의회 소관 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함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2023.1.1. 시행)에 따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되어 의회에 그 소관 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사무의 소관을 도시·교통위원회로 정함.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에 대한 의회 소관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덧붙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사무의 성격으로 볼 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참고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

제10조의2(원도심활성화추진단)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둔다.

②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원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민관합동 협업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구민 소통을 위한 조직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28.]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의2(원도심활성화추진단)

-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본 개정안의 시행 전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의 사무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 됨.

- 다만, ‘소급입법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조례의 제·개정 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처리 및 심사 시 통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